

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2022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사록

1. 일 시 : 2022년 09월 02일(금) 오후 2시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4, 16층(서초동, 삼성생명서초타워)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(주) 내 회의실
3. 참석자 :

주식총수	300,000 주	주주총수	1 명
출석주식수	300,000 주	출석주주수	1 명

의장인 대표이사 윤양수는 의장석에 등단하여 정관과 상법에서 정한 본회의 소집절차 및 출석한 주주의 수가 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,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■ 제1호 의안 :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

의장은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2호 의안 :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

의장은 자산보관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3호 의안 :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승인의 건

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 승인의 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4호 의안 : 주식분할에 관한 건

의장은 당회사의 주식분할에 관하여 설명하고 본회사 1주의금액 1,000 원 을 2주로 분할하여 1주의금액 금 500 원으로 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2,000,000,000주에서 4,000,000,000주로 , 발행주식의총수 그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가 보통주식 300,000주에서 보통주식 600,000주로 변경할 것에 대한 의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■ 제5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의장은 당회사의 정관 제2조 및 제6조 및 제7조 및 제26조 및 제27조 및 제32조 및 제46조 및 제46조의2 및 부칙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말하고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, 참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제 2 조(목적) ①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“부투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6 조(발행예정주식의 총수)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십억(4,000,000,000)주로 한다.

제 7 조(1 주의 액면금액) 회사가 발행하는 1 주의 액면금액은 금 오백원(W500)으로 한다.

제 26 조(주주총회의 결의사항)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. 1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. 다만, 두 기 이상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, 각

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, 동일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두 번 확정하지 않음.

제 27 조(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) 삭제

제 32 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(i)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 제 368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, (ii)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46 조(차입 및 사채의 발행) ③ 회사가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투법 시행령 제 33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부투법 시행령 제 33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.

제 46 조의 2(전환사채의 발행)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 제 434 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단, 본 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은 제 46 조 제 2 항에 따른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(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단, 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이후에는 본 호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%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. 2. 제 42 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·운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,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정한 자(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단, 회사가 제 11 조에 따라 상장한 이후에는 본 호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%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.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[익일]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④ 전환으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 및 전환 전 사채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3 조를 준용한다.

부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
(폐회시간 : 오후 3시)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2022년 09월 02일



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

의장 겸 대표이사 윤 양 수

